

# 취·창업활동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: 2014. 05. 09.

개정 : 2016. 10. 07.

개정 : 2016. 12. 09.

개정 : 2021. 03. 05.

담당 : 취·창업지원센터(950-5524)

## ----- 목 차 -----

|| 제1조(목적)

|| 제2조(구성)

|| 제3조(임기)

|| 제4조(기능)

|| 제5조(회의)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 제6장 제26조(취·창업지원센터) 1. @의 취·창업활동위원회 운영에 따라 취·창업활동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함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16.10.07)(개정16.12.09)

**제2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9명 내외로 구성한다.(개정 21.03.05)

② 위원장은 취·창업지원센터 센터장으로 하고,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16.10.07)(개정16.12.09)

③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
**제3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,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수행한다.

1. 진로 및 취·창업지도 기본계획 수립(개정16.12.09)
2. 취·창업 유관기관(기업체, 정부기관, 사회단체 등)과의 유대강화 방안 수립(개정16.12.09)
3. 대졸 취·창업 현황, 전망파악 및 그 대책 수립(개정16.12.09)
4. 취·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(개정16.12.09)
5. 취·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립(개정16.10.07)(개정16.12.09)
6. 동문과의 유대강화 방안 수립
7. 졸업생 추수지도 및 창업지원(개정16.12.09)
8. 기타 진로 및 취·창업지도에 관한 주요사항(개정16.12.09)
9. 취·창업프로그램 성과분석 등 환류체계를 통한 개선사항 검토(신설 21.02.25)

**제5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4년 05월 09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6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6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1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.